

35. 트리니다드토바고 (Trinidad and Tobago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	13.2% 가입자가 1/3 부담, 사용자가 2/3 부담	13.2% 가입자가 1/3 부담, 사용자가 2/3 부담	-
연금수급 개시 연령	60세	60세 ~ 65세	수급연령 조정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750주	750주	-
노령연금 지급률	가입자의 주당 평균소득 30% ~ 48%	주당 TT\$130.78 ~ TT\$941.40 (월 TT\$566.72 ~ TT\$4,079.40)	급여 규모 구체화
일시금	가입기간이 750주 미만일 경우,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3배를 일시금으로 지급	가입기간이 750주 미만일 경우,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3배를 일시금으로 지급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 및 현행법** : 1934년(공공부문 의무직업연금), 1939년(노령사회연금), 1951년(사회부조), 1971년(사회보험)

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 및 사회부조**

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- **당연적용** :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
- 농업근로자, 가내근로자, 유급견습생 포함
 - **임의적용** : 사회보험제도에 당연적용되었던 근로자는 노령연금, 유족연금, 장제비를 위한 임의가입 가능
 - **적용제외** : 자영자, 국제기구 특정 근로자
 - **특별보상제도** : 공공부문 근로자 대상(공공부문 의무직업연금)

- 사회부조 : 트리니다드토바고 거주 취약계층

4 재원조달

○ 가입자

- 사회보험
 - 소득등급(16등급)에 따라 주 또는 월 소득의 13.2%의 1/3
 - 임의가입자는 가입소득의 13.2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월 소득은 TT\$867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월 소득은 TT\$13,600
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, 산재급여를 위한 재원이기도 함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 : 미적용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- 소득등급(16등급)에 따라 주 또는 월 임금총액의 13.2%의 2/3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월 소득은 TT\$867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월 소득은 TT\$13,600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, 산재급여를 위한 재원이기도 함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없음. 사용자로서 납부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최소 750주 이상이며, 60세 ~ 65세 사이에 퇴직연령은 유동적임
 - 가입자가 장애급여, 질병급여, 출산급여 또는 산재급여를 받은 각각 완성된 기여 주는 보험료 납부로 인정됨

- 고용은 계속될 수 있으나, 65세 전이라면 청구 당시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함. 단, 이후 고용을 재개할 수 있음
- 노령연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지급 가능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750주 미만이며, 60세 ~ 65세 사이에 퇴직연령은 유동적임
 - 가입자가 장애급여, 질병급여, 출산급여 또는 산재급여를 받은 각각 완성된 기여 주는 보험료 납부로 인정됨
 - 고용은 계속될 수 있으나, 65세 전이라면 청구 당시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함. 단, 이후 고용을 재개할 수 있음
 - 노령일시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지급 가능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연금청구 직전 20년 중 최소 15년 이상 트리니다드토바고에 거주한 65세 이상인 자, 또는 트리니다드토바고 총 거주기간이 50년이며
 - 소득조사 : 월 소득이 TT\$4,500 이하인 자
 - 노령사회연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지급 가능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장애발생 직전 3년 동안 50주의 납부기간을 포함해 보험료 납부기간이 150주 이상 또는 장애발생 직전 7년 동안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250주 이상 또는 장애발생 전 보험료 납부기간이 750주 이상인 근로불능으로 판정된 60세 미만인 자
 - 장애연금은 60세 도달 시 지급 중지되며 사회보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.
 - 사회보험 장애연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지급 가능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18세 이상이고 청구 전 트리니다드토바고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영구 장애로 확인된 자
 - 소득조사 : 월 소득이 TT\$1,000 이하인 자
 - 사회부조장애연금은 해외지급 불가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50주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노령/장애연금 수급자이었던 경우 지급
 - 수급 가능 유족 : 배우자, 가입자의 사망 전 사망자와 3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, 가입자의 사망 전 있었던 16세 이하 미혼 자녀(완전 학생인 경우 19세, 장애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), 피부양부모
 - 유족배우자 재혼 시 유족연금은 중지되나 피부양 자녀는 고아연금 계속 수급
 - 재혼일시금 : 재혼하는 배우자에게 지급
 - 유족연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지급 가능

- 장제비(사회보험)
 - 가입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고 산재급여를 받는 경우,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25주 이상인 경우
 - 장제비는 해외지급 가능
- 장제비(자산조사, 사회부조)
 - 장례 비용을 감당할 지원 수단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빈곤한 개인 및 가족에게 지급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주당 TT\$130.78 ~ TT\$941.40(월 TT\$566.72 ~ TT\$4,079.40) + 750주 초과 매 25주의 보험료 납부기간마다 주당 TT\$1.41 ~ TT\$13.00(월 TT\$6.11 ~ TT\$56.33) 지급
 - 가입자의 소득 등급에 따라 차등(16개 등급)
 - 월 최저 노령연금액 : TT\$3,000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
 -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3배를 일시금으로 지급
 - 최저 노령일시금은 TT\$3,000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수급권자의 소득에 따라 최저 월 TT\$500에서 최대 월 TT\$3,500 지급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의 주당 평균소득 30% ~ 48%에 750주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25주당 주당 평균소득의 0.56% ~ 0.71%씩 가산한 금액 지급
 - 가입자의 소득 등급에 따라 차등(16개 등급)
 - 주당 평균소득은 가입자의 평생 평균소득 및 소득 등급에 기초함
 - 최저 장애연금 없음
- 장애사회연금(자산조사, 사회부조)
 - 월 TT\$1,800지급

○ 유족급여

- 배우자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사회보험 노령/장애연금의 60%를 배우자에게 지급
 - 최저 배우자연금액은 월 TT\$600
 - 재혼일시금 : 배우자 연금의 52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
- 고아연금(사회보험)

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사회보험 노령/장애연금의 30%를 각 고아에게 지급
- 완전고아인 경우 60%를 지급
- 최저 고아연금액은 월 TT\$600; 완전고아는 TT\$1,200
- 피부양부모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사회보험 노령/장애연금의 30%를 한 명의 피부양부모에 지급하거나 두 명에게 균분 지급
 - 최저 피부양부모연금액은 피부양부모 1명당 월 TT\$300; 부모가 1명만 생존한 경우 월 TT\$600
 - 모든 유족연금 합산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사회보험 노령/장애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장제비(사회보험)
 -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TT\$7,500 지급
- 장제비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TT\$7,000 지급
 - 급여조정 : 장제비는 장례와 관련된 비용의 변동에 기초하여 조정됨

7

관리운영기관

○ **재정부(Ministry of Finance)**

- www.finance.gov.tt
- 사회보험제도의 전반적 감독

○ **트리니다드토바고 국가보험위원회(NIBTT, National Insurance Board of Trinidad and Tobago)**

- www.nibtt.net
- 노.사.정 대표로 구성된 3자 위원회
- 사회보험제도 운영

○ **사회개발가족부(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Family Services)의 사회복지국(Social Welfare Division)**

- www.social.gov.tt
- 사회부조제도 운영

<2019년 ISSA 자료>